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4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발 의 자 : 백혜련 · 이건태 · 김기표
김남희 · 김상욱 · 박지혜
염태영 · 전용기 · 조인철
정청래 · 김병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단,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람제한사유로 추가하고, 판결서를 열람·복사한 사람이 판결서의 정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자 하며, 판결서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판결서의 전자적 보관 여부, 판결서 비실명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한편,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어 불필요한 영장의 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및 제215조의2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압수, 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

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u>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u>) ① 누구든지 <u>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 물건의 명칭 ·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u>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제59조의3(<u>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u>) ① -----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u>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u>) --- 등본, <u>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u> ----- -----<u>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u>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15조의2(압수, 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